

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서 정 호

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제2조)
-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~제5조)
-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-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,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~제8조)
-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필요성

-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20.12.10. 시행)되어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도내 장애예술인의 창작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됨.
- 현재 시행되고 있는 「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」는 지원대상이 장애인으로 광범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근거로 미흡하고,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부족하여 장애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개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현재 7개 자치단체에서 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”를 제정·시행하고 있음(표 참조).

[표] 광역자치단체 장애예술인 관련 조례 제정 현황

(2023.12.31.기준)

연번	시·도	조례명	제정일
1	경기	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 12. 31.
2	충남	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 04. 30.
3	광주	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	2021. 06. 01.
4	제주	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	2021. 05. 20.
5	서울*	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 03. 25. (전부개정)
6	부산*	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	2021. 12. 19. (전부개정)
7	경북	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	2023. 05. 25.

* 서울, 부산의 경우 기존 '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'를 전부개정하였음.

나. 주요 내용

- '안 제1조'는 조례의 목적으로 충청북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 이바지에 그 목적이 있음을 명시함.
- '안 제2조는' 조례에 사용되는 "장애예술인", "문화예술", "문화시설"의 용어를 정의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함.
- '안 제3조는'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- '안 제4조'는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

규정하였고, 시행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, 단체에게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.

- '안 제5조'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도내 관련기관의 장과 장애예술인들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'안 제6조'는 도지사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.
- '안 제7조'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(안 제7조),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노력(안 제8조),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(안 제9조)를 위해 도지사가 노력하도록 함.
- '안 제10조'는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·단체,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- 부칙'안 제2조'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 관련 개정이 필요한 「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」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명시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이번 제정 조례안은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,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
- 본 제정 조례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고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또한 조례안 제5조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충청북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사하고, 그 결과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.

붙임: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. 끝.